
**산림조합 상호금융 부실채권 매각주관사 선정
과 업 지 시 서**

2024. 6.



1. 과업 개요

1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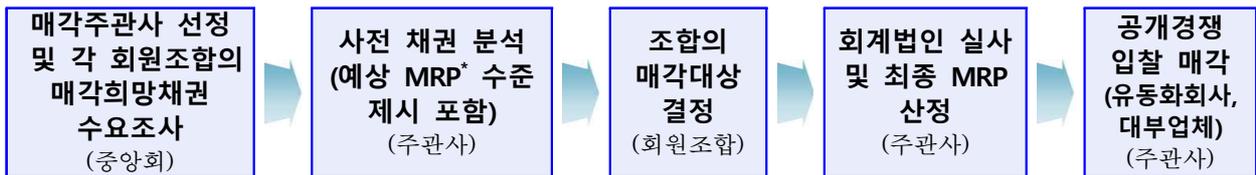
- 회원조합이 보유중인 상호금융 미정리 연체 담보채권 매각업무 일체를 수행할 자문사(회계법인) 선정을 통해 효율적 일괄 매각 추진

2 대상 및 절차

- 매각 대상 : 회원조합 상호금융 연체 담보채권

※ 매각 대상 채권은 각 회원조합에서 결정 후 중앙회에 매각 의뢰 예정이며, 그 규모는 조합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참고】 회원조합 부실채권 매각 절차



- ※ 각 회원조합은 매각희망채권의 예상 MRP 수준을 바탕으로 매각대상채권을 선별·결정
- ※ 최종 MRP 산정 결과가 예상 MRP 수준의 오차범위 밖으로 가격이 낮아진 채권은 매각 철회 가능
- ※ 부실채권 매각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일부 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3 과업 기간

- 계약시작일로부터 6개월. 단, 중앙회와 매각 주관사 간 상호 협의하에 매각대상채권 소진 등 사유로 6개월 이내 종결 가능
- ※ 금번 일괄매각은 회원조합의 매각의뢰 요청 건수 등에 따라 계약기간 내 추가 매각 가능

4 사업 예산 (조합분담)

금400,000,000원 (부가가치세 등 포함)

※ 매각 예상 금액 등을 활용한 예상치로 실제 지급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5 과업 범위

매각희망채권 사전 분석

○ 매각희망채권의 매각 가능 여부 및 예상 MRP 수준 제시

매각대상채권 평가 및 실사

매각전략 및 매각 POOL 수립

○ 최적 매각구조 및 채권매각액 극대화 방안 등

투자예상자 물색

입찰, 투자자와의 협상 및 중재

공개경쟁 입찰 과정 수행

매각대금 지급 등 정산·세무관리

매각업무 관련 보고서(파일) 제출

기타 매각관련 자문(회계처리 및 법률관련 자문 등)

6 과업 일반 지침

1. 과업 수행시는 전과정의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 라 함)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한다.
2. 본 과업 수행시 자료는 공공기관 및 기타 공신력 있는 최근의 자료를 활용한다.
3.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과업수행상 수반되는 관련업무는 과업지시서의 일부로 보아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제안서 보완자료는 계약서의 일부로 보아 계약의 효력을 발생한다.
5. 과업 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6.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 수행에 따른 조사 및 분석자료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도중 특정 참여자에 대한 중앙회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해당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신·구 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중앙회에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과업수행자는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중앙회 요청시 월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갖는다.
9.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보고회의 개최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회의 수정, 보완, 지시사항을 용역내용에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0. 중앙회의 방침 혹은 여건변동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1. 과업 수행중 방침변경·천재지변·추가 과업지시서에 따른 과업내용의 현저한 증가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